

제264회 정례회
기획경제위원회

제 안 설 명

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 : 747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준희
(새정치민주연합, 관악1, 도시계획관리위원회)

- 존경하는 김용석 위원장님과
기획경제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도시계획관리위원회 박준희 의원입니다.

- 오늘 본 의원이 발의 한 「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.

-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‘사회적기업의 설립·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해 우리 사회에서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,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’ 2012년 2월 1일 공포되었습니다.

- 동법은 시행령 제7조2에서 시·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, 현재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에는 위 동법 시행령 제7조2에 따른 ‘사회적기업 지원계획’에 포함되어야 할 일부 사항이 미포함되어 있습니다.

-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.

□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10명의 의원들께서 찬성해주신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